

생계급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수급자 세대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으로 최저생활 보장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54,310,000천원(국비 90%, 시비 7%, 구비 3%)
- 월평균 11,000세대 지원
- 사업내용 : 일반수급자 생계급여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
-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-10조
- 추진경위 :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- 추진계획 :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급여 착오지급 최소화 및 적기 지급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45,147,777	0	45,147,777
국고보조금	40,633,000	0	40,633,00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,160,344	0	3,160,344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,354,433	0	1,354,433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1,286,951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9,852,989	43,840,579	45,187,657	45,826,925	52,278,546

교육급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수급자 자녀 등에 대해
교육기관(교육청) 보조
34,789천원
- 사업내용 : 일반수급자 교육급여
- 지원형태 : 자치단체보조
- 지원조건 : 국비 90%, 시비 7%, 구비 3%
구비부담분에 대해 교육청 보조
-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교육청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
- 추진경위 : 2021년 1월 보조금 확정 예정
2021년 1월, 7월 보조금 지급 예정
- 추진계획 : 2021년 7월까지 보조금 지급 예정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5,543	0	35,543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35,543	0	35,543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1,486	44,421	47,043	48,590	35,543

정부양곡지원사업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할인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350,000천원 (국비 100%)
규모 : 10,000세대
- 사업내용 :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택배대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정부양곡 구입을 원하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생계급여 공제 및 현금 납부 신청 - 택배비 10kg 2,600원, 동일 가구 추가 1포대당 1,300원
-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, 양곡관리법 제9조
- 추진경위 : 당월 신청분(매월 10일까지 신청)에 대해 공급신청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
- 추진계획 : 신청접수관리 철저 및 배송지연 최소화 추진 노력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247,769	0	247,769
국고보조금	247,769	0	247,769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61,946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55,999	886,726	1,226,896	247,678	300,963

해산장제급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해산장제시 경제적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장제급여 800천원
해산급여 700천원
- 사업내용 : 해산장제시 현금 급여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90% 시비 7% 구비3%
- 사업위치 :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및 해산시 지급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, 14조
- 추진경위 : 저소득층 해산장제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신속한 장제처리 및 해산 지원
- 추진계획 : 수급자 사망 후 장제비영수증, 해산 후 증명서 첨부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- 신청 후 4일 이내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지급함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422,222	0	422,222
국고보조금	380,000	0	380,00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9,555	0	29,555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2,667	0	12,667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1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03,700	257,250	314,573	264,838	364,269

해산장제급여(시설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해산장제시 경제적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장제비 800천원
해산비 700천원
- 사업내용 : 해산장제시 현금 급여 지원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국비 90% 시비 10%
- 사업위치 : 관내 시설 수급자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, 14조
- 추진경위 : 저소득층 해산장제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신속한 장제처리 및 해산 지원
- 추진계획 : 시설수급자 사망 후 장제비영수증, 해산 후 증명서 첨부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- 신청 후 4일 이내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지급함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0,000	0	10,000
국고보조금	9,000	0	9,00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,000	0	1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0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5,000	12,750	2,250	12,750	9,500

복지관리업무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 추진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49,548천원
- 사업내용 : 복지관리 서비스 강화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 부서 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(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,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업무추진비, 위원회 운영비, 사회복지무원 중식비 등)
- 추진계획 :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, 생활보장위원회, 노숙인심사위원회 등 업무 추진 복지안내책자 제작, 공용휴대전화 요금 지급 등 사무지원 업무 추진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49,467	0	49,467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49,467	0	49,467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2,387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2,137	34,152	46,434	22,323	26,470

저소득주민 특별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차상위계층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사업대상 약 7,000명, 사업예산 336,500천원
- 사업내용 :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시비 10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
- 추진경위 : 2020년 2, 4, 7, 10월 자녀교통비 지급, 2020년 11월, 12월(추가지급 있을시) 월동대책비 지급
- 추진계획 : 2020년 2월까지 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(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포함) 시행 예정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36,500	0	336,5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36,500	0	336,5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85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00,737	359,136	331,339	325,946	318,090

무연고 사망자 처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차상위계층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무연고사망자 장제업무 처리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시신처리 공고 : 3,500천원
시신처리 대행 : 1구당 750천원 * 10명
- 사업내용 : 무연고사망자 시신처리대행,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료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구비 100%
관내 행려환자 및 무연고 사망자
- 사업위치 : 관내 행려환자 및 무연고사망자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
- 추진경위 : 연고자가 없는 행려환자 및 무연고자 사망시 신속한 장제 처리 지원
- 추진계획 : 관내 행려환자 및 무연고자 사망시 입원병원에서 장제비 지급 신청 - 4일 이내 장제비 지원 장제처리한 사망자 반기별 신문공고 의뢰함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1,500	0	11,5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1,500	0	11,50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,878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0,180	6,720	10,562	10,845	8,278

부산형 기초보장제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차상위계층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중앙정부의 정책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4,000천원 (시비 100%)
- 사업내용 :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대상자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및 부가급여 지급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부산시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인 사람
-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, 국민기초생활보장법
- 추진경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여부 선조사 후 기초수급 부적합자 또는 중지자에 대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적합여부 판정하여 급여 지급
- 추진계획 : 급여 착오지급 최소화 및 적기 지급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0,000	0	60,00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60,000	0	60,00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5,0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,953	169,845	434,825	86,346	10,447

자활근로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단위사업 : 자활사업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
※ 재정지원 일자리사업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021년 예산 : 10,257,120천원(국비90%, 시비7%, 구비3%)
- 사업내용 : ○ 참여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중 근로능력자
○ 인원 : 570명 (구직영사업 290명, 민간위탁사업 280명)
○ 사업내용
- 민간위탁사업 : 커피, 식당, 간병등
- 구직영사업 : 환경정비, 공익적사업, 복지업무보조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중 근로능력자
- 사업위치 : 사하구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, 제15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, 제26조
- 추진경위 :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활·자립 도모
- 추진계획 : 참여자의 욕구, 적성, 능력, 여건에 따라 적절한 자활근로 사업 배치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,541,373	0	5,541,373
국고보조금	4,987,236	0	4,987,236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87,896	0	387,896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66,241	0	166,241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,400,347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4,855,890	4,694,109	5,454,474	7,892,066	9,443,402

지역자활센터 운영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단위사업 : 자활사업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,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, 운영비 지급(국비70%, 시비30%)
- 사업내용 :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, 업무추진비, 운영비, 재산조성비등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사하지역자활센터, 두송지역자활센터(2개소), 종사자 16명
- 사업위치 : 사하지역자활센터, 두송지역자활센터(2개소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~제30조
- 추진경위 : 지역자활센터 안정적인 운영 추진
- 추진계획 : 「2021년 자활사업 안내(1)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자활센터 직제, 보수지침」, 「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」에 의거하여 적법·적정하게 집행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24,764	0	524,764
국고보조금	366,956	0	366,956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57,268	0	157,268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540	0	54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31,356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11,114	508,708	539,646	627,542	631,661

자활사례관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단위사업 : 자활사업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,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사례관리자 인건비 지급(국비70%, 시비30%)
- 사업내용 : 사하지역자활센터, 두송지역자활센터(2개소) 사례관리자 2명 인건비 지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사하지역자활센터, 두송지역자활센터(2개소) 사례관리자
- 사업위치 : 사하지역자활센터, 두송지역자활센터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~제30조
- 추진경위 : 지역자활센터 안정적인 운영 추진
- 추진계획 : 「2021년 자활사업 안내(1)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자활센터 직제, 보수지침」, 「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」에 의거하여 적법·적정하게 집행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4,800	0	54,800
국고보조금	38,360	0	38,36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6,440	0	16,44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5,7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51,034	54,560	49,835	56,694

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

회계연도 : 2021	회 계 : 일반회계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	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정책사업 :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	단위사업 : 자활사업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(시비100%)
- 사업내용 :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 직원 5호봉 이상 : 26만원, 직원 5호봉 미만 : 21만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사하지역자활센터, 두송지역자활센터(2개소), 종사자 12명
- 사업위치 : 사하지역자활센터, 두송지역자활센터(2개소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
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
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~제30조
- 추진경위 : 지역자활센터 안정적인 운영 추진
- 추진계획 : 「2021년 자활사업 안내(1)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자활센터 직제, 보수지침」, 「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」에 의거하여 적법·적정하게 집행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6,840	0	36,84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6,840	0	36,84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9,21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5,166	34,912	34,990	35,090	37,040

자활장려금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단위사업 : 자활사업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021년 예산 : 373,084천원 (국비90%, 시비7%, 구비3%)
- 사업내용 : 생계급여 산정 시,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% 공제 후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
시장진입형, 인턴도우미형,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대상 지급
- 사업위치 : 사하구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
- 추진경위 :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
- 추진계획 : 생계급여 산정 시,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% 공제 후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373,084	0	373,084
국고보조금	335,775	0	335,775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26,116	0	26,116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1,193	0	11,193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93,274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92,583	108,753

노숙인시설 생계비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

정책사업 : 노숙인 보호 및 지원

단위사업 : 노숙인 시설운영 강화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노숙인시설 생계비(주,부식비 등)지원, 정원 107명, 예산 255,556천원
- 사업내용 : 노숙인 시설운영 및 생계급여 지급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 90% , 시비 10%
- 사업위치 : 마리아마을(사하구 장림2동)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- 추진경위 : 노숙인요양시설(마리아마을) 생활자 주,부식비 지급, 명절 특별위로금, 월동대책비 지원
- 추진계획 : 지급기준일(매월 20일) 이내 지원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255,556	0	255,556
	국고보조금	230,000	0	230,00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25,556	0	25,556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0	0	0
	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63,892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47,965	245,401	243,109	228,555	227,723
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재무활동(생활보장과)

단위사업 : 내부거래지출(일반회계)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	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	계	14,368	0	14,368
	국고보조금	0	0	0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0	0	0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14,368	0	14,368
	지방채	0	0	0

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,595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0

인력운영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생활보장과)

단위사업 : 기본경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등의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급여 혜택 제공 및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예산의 절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170,000천원
- 사업내용 :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외 수당 등 지급
- 지원형태 :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43,688	0	43,688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43,688	0	43,688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0,92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29,933	38,378

기본경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일반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기타 기타

정책사업 : 행정운영경비(생활보장과)

단위사업 : 기본경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최소 운영경비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부서운영수용비 : 9,180천원
기본업무수행급량비 : 11,136천원
공기청정기 임차료 : 1,342천원
기본업무수행 여비 : 97,440천원
부서운영업무추진비 : 4,800천원
- 사업내용 : 사무관리비(부서운영수용비, 기본업무수행급량비, 공기청정기 임차료), 국내여비(기본업무수행 여비), 업무추진비(부서운영)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해당없음
- 사업위치 : 사하구청 2청사 생활보장과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예산서에 의함
- 추진경위 : 해당없음
- 추진계획 :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등 집행
초과 근무 직원 특근 매식비 집행
공기청정기 임차료 집행
외근 여비 집행
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94,186	0	94,186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94,186	0	94,186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3,545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26,264	24,764	25,855	25,090	68,386

의료급여 진료비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보장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(475,839천원)
- 사업내용 : 의료급여진료비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80% 시비20%
- 사업위치 :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
의료급여법 제13조 제5항 및 제6항
의료급여 사업안내 제6편(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)
- 추진경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경과시켜 최소한의 의료혜택 보장함
- 추진계획 : 1.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건강보험 공단 수신 후 지급
2.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 공단 수신 후 지급
3. 입양아동 정산금 건강보험 공단 수신 후 지급(연 4회)
4.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신청시 환급
5. 당뇨소모성 재료 지급청구서 신청시 환급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47,158	0	647,158
국고보조금	517,726	0	517,726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129,432	0	129,432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61,79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404,914	525,316	640,897	647,129	688,220

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경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272,995천원
- 사업내용 : 건강생활유지비 지원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80% 시비20%
- 사업위치 : 관내 의료급여 1종수급자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
- 추진경위 : 월6천원 지원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2016년 잔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수신 후 개인 계좌 입금
- 추진계획 :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건강보험 공단에서 수신 후 개인별 계좌입금(1개월 이내) 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	157,340	0	157,340
	국고보조금	125,872	0	125,872
	균특보조금	0	0	0
	기금보조금	0	0	0
	특별교부세	0	0	0
	소방안전교부세	0	0	0
	시도비	31,468	0	31,468
	특별교부금	0	0	0
	시군구비	0	0	0
	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9,341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47,995	163,099	149,812	157,283	153,966

의료급여 업무관리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30,000천원
- 사업내용 : 의료급여 서식 인쇄및 홍보문 제작,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국비80% 시비20%
- 사업위치 : 사하구 관내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42,991	0	42,991
국고보조금	34,393	0	34,393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8,598	0	8,598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10,762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5,291	5,720	5,930	1,930	3,674

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(의료급여관리사)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지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 안정 도모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의료급여관리사 5명 운영
- 사업내용 :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5명 인건비
- 지원형태 : 자치단체보조
- 지원조건 : 국비80%, 시비20%
- 사업위치 : 사하구청
- 시행주체 : 사하구청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68,136	0	168,136
국고보조금	134,509	0	134,509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33,627	0	33,627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0	0	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42,046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157,497	164,446	154,738

예비비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

단위사업 :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을 위한 예비비확보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예비비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0,160	0	10,16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0,160	0	10,16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0	0	0	0	0

국시비보조금반환금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

정책사업 : 재무활동(생활보장과)

단위사업 : 보전지출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2017년 의료급여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
- 사업내용 : 2017년 의료급여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
- 사업위치 :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
- 추진경위 :
- 추진계획 :

□ 소요재원

(단위:천원)

재원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14,368	0	14,368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14,368	0	14,368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3,592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71,790	206,151	186,731	14,296	12,088

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자활기금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단위사업 :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·운용하는 기금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3,029,795천원(구비100%)
- 사업내용 :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
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수급자 및 저소득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자활기업, 자활사업실시기관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사업위치 : 사하구청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
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 2~7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2
- 추진경위 :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- 추진계획 :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용자, 시설보강사업,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비용 지원등 근로능력자의 자
활
자립 도모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524,750	0	524,750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524,750	0	524,750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283,80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194,789	371,520	215,344	140,631	557,118

여유자금 예치

회계연도 : 2021

회 계 : 자활기금

조 직 :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

정책사업 : 재무활동(생활보장과)

단위사업 : 보전지출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·운영하는 기금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적사업
- 총사업비 : 연례반복적사업
- 사업규모 : 3,094,832천원(구비100%)
- 사업내용 :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
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 수급자 및 저소득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
- 지원형태 : 직접수행
- 지원조건 : 자활기업, 자활사업실시기관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사업위치 : 사하구청
- 시행주체 :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
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 2~7
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2
- 추진경위 :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- 추진계획 :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정보 응자, 시설보강사업,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비용 지원등 근로능력자의 자
 활
 자립 도모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

□ 소요자원

(단위:천원)

재 원 별	예산액	예산성립후 증감액	예산현액
계	664,761	0	664,761
국고보조금	0	0	0
균특보조금	0	0	0
기금보조금	0	0	0
특별교부세	0	0	0
소방안전교부세	0	0	0
시도비	0	0	0
특별교부금	0	0	0
시군구비	664,761	0	664,761
지방채	0	0	0

□ 월별배정액

(단위:천원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0	0	0	0	0	0
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0	0	0	0	0	0

□ 과거집행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2016	2017	2018	2019	2020
3,171,179	3,223,804	1,022,821	1,103,063	0